

개인 거주자에 대한 세금 안내 (공개매수)

※ 본 내용은 KB금융지주의 주주님과는 무관하며 당사의 공개매수에 응하시는 KB캐피탈 주주에게만 해당됩니다.

I.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 (1) KB 캐피탈 주주님 중 KB 금융지주의 KB 캐피탈 주식 공개매수에 응모하여 KB 캐피탈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2)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양도가액은 주당 공개매수가격 27,500 원에 공개매수 주식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로 연 250 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3) 양도차익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주주(지분을 1% 이상 혹은 시가총액기준 25 억원 이상인 주주)인 경우로서 주식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4) 양도소득세를 2017년 8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예정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주식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 (1) KB 금융지주의 KB 캐피탈 주식 공개매수에는 양도가액의 0.5%의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양도가액은 주당 공개매수가격 27,500 원에 공개매수 주식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 (2) KB 금융지주의 KB 캐피탈 주식 공개매수는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인 KB 증권을 통해서 이행되는 바,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인 KB 증권이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할 예정입니다.

II. 유의사항

1.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셔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주님께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 47 조의 2 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2.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본건 공개매수의 사무취급자로서 KB 증권이 KB 금융지주를 위하여 공개매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주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진행할 예정인바, 본건 공개매수 관련 세무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1588-6611(KB 증권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